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 1998. 11. 7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11.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1998. 11.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가. 제안이유

○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정년단축 : 5급상당 61 → 60세, 6급상당 이하 58 → 57세

○ 정년연장자 : 98. 12. 31일자 퇴직

○ 근무상한연령 연장제도 폐지

○ 휴직의 요건을 일반직에 준하여 정비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없음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63 호
의결년월일	98. 11. 14 (제66회)

제출년월일 : 1998. 11. 7

제출자 : 부천시장

 제안이유

-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주요골자

- 정년단축 : 5급상당 61 → 60세, 6급상당 이하 58 → 57세
- 정년연장자 : 98. 12. 31일자 퇴직
- 근무상한연령 연장제도 폐지
- 휴직의 요건을 일반직에 준하여 정비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6월 이상”을 “상당기간”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상당기간이라 함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휴직) ① 별정직공무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헬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

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 휴가기간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 9. 19 법률 제5568호) 개정 전의 제66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⑦(생략)</p> <p><u>③ 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의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u></p> <p><u>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기간·절차 및 신청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⑦(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직권면직) (생략)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u>6월 이상</u> 직무를 감당 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u>단서신설</u>) 2.~4. (생략)	제10조(직권면직) (현행과 같음) 1. <u>상당기간</u> <u>단, 상당기간이라 함은 부천시지방공무원복</u> <u>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u> <u>휴가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말한다.</u> 2.~4. (현행과 같음)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 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헐하기 위하여 징 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자 는 제외한다.) <u><신 설></u>	제11조(휴직) ①별정직공무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헐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 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u><신 설></u>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 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 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 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 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 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 으로 본다.